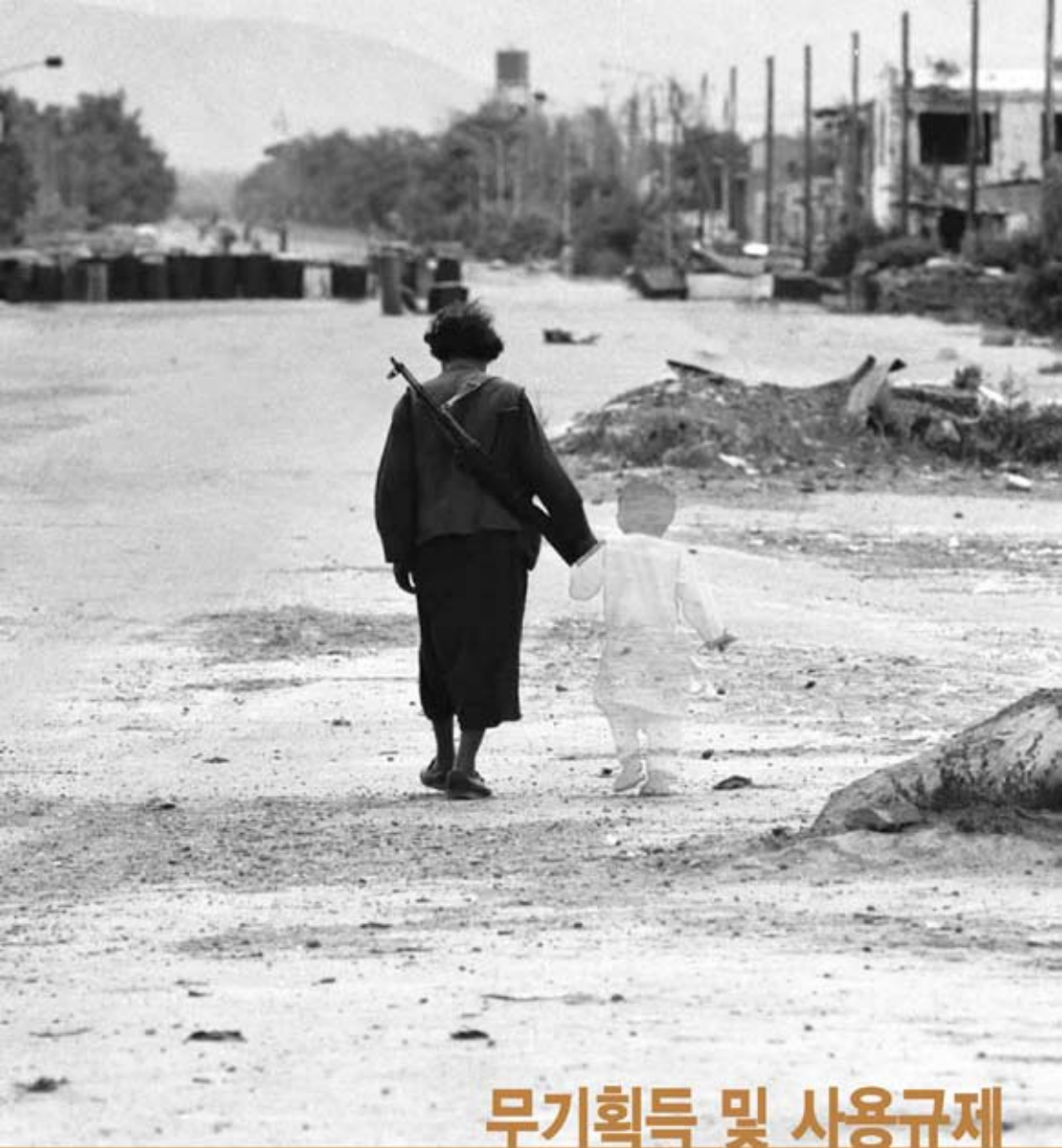




무기획득 및 사용규제



ICRC

전쟁이 끝나면 당신은 민간인들이
“평화”로운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민간인들이 전투가 끝난 후에도 전투 중에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바로 소형무기와 탄약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장 폭력이 지속되는 것이다.



소형 무기 - 값 비싼 대가

매년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총탄의 위협 속에서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성폭력에 노출되거나 실형인으로 전락한다. 무력충돌이 벌어지고 있거나 종료된 후에는 공격용 소총을 음식 보다 오히려 더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소형무기 내지는 경량무기의 범주에 드는 공격용 소총, 기관총, 수류탄, 박격포는 현대 무력충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 무기들이다. 이 무기들은 의도적으로 민간인들을 공격할 때조차도 가장 널리 이용된다. 이러한 무기들은 다른 주요 무기체계와는 달리 그 취득이 국제적으로 용인된 규칙에 의해 규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01년 개최된 모든 형태의 소형 및 경량무기 불법거래 양상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실행 계획을 채택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글로벌 수준에서 이 문제를 다룬 첫 번째 조치였다.

소형무기 및 경량무기의 획득과 사용 규제는 특별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무기들은 저렴하고, 운반과 밀반입이 용이하며, 반영구적인데다가 조금의 훈련만 받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군용 무기의 획득이 용이해지고 무장 폭력이 일반화 됨에 따라 무력충돌 중, 무력충돌 종료 후 그리고 평시에도 민간인들은 동일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놀랍게도 어떤 지역에서는 소형무기로 촉발된 폭력 때문에 전시가 아닌 "평시"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과 상해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¹ 무력충돌 이후 무기의 획득이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긴장과 폭력이 지속되고 항구적 평화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무기 획득이 규제되지 않으면 무력충돌 당시 뿐만 아니라 무력충돌 종료 후에도 민간인이 겪는 고통이 가중되고 민간인 희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²



전 세계의 무력충돌 현장에서 얻은 ICRC의 경험에 바탕을 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무기획득이 확산되면 국제인도법 위반을 조장할 수 있다.

- 무기, 특히 소형무기와 경량무기의 획득이 점점 더 용이해지면서 국제인도법 위반의 위험성도 커져왔다.
-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이 무장 단체, 범죄 폭력단체, 민간인, 심지어 전투원으로 영입된 아동과 같은 새로운 행위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있다. 이들은 국제인도법 지식과 인도적 원칙에 대한 존중 의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인도법에 포함된 전쟁의 기본 규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군대에서 사용되는 무기의 획득이 점점 더 용이해짐에 따라 전쟁 기본규칙의 위반 사례 또한 더욱 늘어나고 있다.

무기획득이 확산되면 희생자들에 대한 원조 활동도 방해받게 된다.

- 인도주의 기관이 공격을 받거나 그들이 일하고 있는 국가에서 활동을 중지하고 떠날 것을 종용 당하면 질병, 기아 및 폭행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안전에 대한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인도적 활동의 비용 또한 늘어나게 된다.
- ICRC의 원조 활동은 안전상의 위협으로 인해 지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단되기까지 한다.

정부의 책임

국제인도법(혹은 무력충돌법)의 기본 원칙은 비전투원의 보호를 규정하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무기의 획득은 반드시 엄격히 규제되어 이러한 기본 규칙의 존중이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무기거래를 충분히 규제하지 않으면 국제인도법과 인권을 위반하는 무기사용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법 존중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된다.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은 이 급박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세계 각 국에 촉구해 왔다. 국가들이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그 존중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의 관련 조항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는 무기와 탄약이 끝내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은 2003년 12월에 개최된 제 28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에서 모든 제네바 협약 체결 당사국 정부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동 회의에서 세계 각 국가들은 국제인도법 존중을 무기 거래 결정을 심사하는 기본 원칙의 하나로 삼고, 무기의 남용으로부터 민간인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과업에 착수하였다.





무기거래 규제 조치의 채택

국제인도법 위반자들의 무기획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기 및 탄약 공급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런 요소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무기 획득자의 국제인도법 존중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필요조건에** 포함하고 특정 무기가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할 때는 무기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무기거래 관련 국내법/국제법 제정 및 정책 마련
- UN실행계획 및 관련 지역의 합의서 등을 포함한 **소형무기에 관한 현행 법률의 이행 상태 개선**
- 국제인도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여 **무기거래를 규제할 공통 기준을 명백히 하는 국제적 합의** 개선
- 국제인도법 위반을 법률로 금지하고 이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지역적 무기거래 봉쇄에 대한 존중 보장**
- **불법 무기거래를 예방**하고 그러한 거래에 연루된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적/국제적 규율 개선
- 무력충돌 종료 시 **전직 전투원의 포괄적인 무장해제와 소집해제** 및 잉여 무기의 적절한 처분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존중의 보장

대부분의 소형무기와 경량무기는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런 무기가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적용에 대한 군, 경찰 및 보안병력의 훈련**을 실시한다.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유엔 무력 및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³ 및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⁴과 같이 책임 있는 무기사용에 관한 규칙을 더욱 잘 알리고, 적용하며 존중해야 한다.
- **기타 무기 보유자**(예를 들어, 비정부 무장 단체, 군 및 보안병력 용역업체 등)가 국제법에 명시된 그들의 책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의 관련 규칙이 무기 보유자에 관한 절차와 지침에** 포함되도록 하고 법적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사회 전문가에 국제인도법 지식**과 국제법과 지역 법률에 의해 수립된 무기사용에 대한 규제 사항을 보급해야 한다.





사람들이 무기를 획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기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무기 보유자들의 동기와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민간인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무기 획득과 남용을 부추기는 복잡한 요인을 밝히지 못하면 무기 공급의 통제만으로는 무장 폭력을 줄이는데 있어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적 불안감과 공포는 민간인들로 하여금 자기방어를 위한 무기를 획득하도록 부추긴다. 불안감은 민간인의 무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공공 치안병력에 대한 신뢰 부족은 이러한 불안감을 악화시킨다. 민간인 무기 수요를 지속적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한 치안 및 형사사법제도를 확립하여 안전과 민간인 보호를 개선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소형무기로 야기되는 폭력의 예방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무기에 대한 공격도 필요하지만, 무기 보유자들의 행동을 개선하고 희생자의 취약성을 줄여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⁵

- 1 *화기규제에 관한 국제적 연구*, 유엔, 뉴욕, 1997&1999; *폭력 및 보건에 관한 세계보고서*, 세계보건기구, 제네바, 2002; 2004 *소형무기 조사: 위기에 처한 권리*,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2004.
- 2 *무력충돌 시 무기획득과 민간인의 상황*, 국제적십자위원회, 제네바, 1999, 6.
- 3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8차 UN 총회에서 채택
- 4 총회 결의사항 34/169(1979, 12, 17)에 따라 채택
- 5 예시는 www.icrc.org/eng/social-research-on-war를 참고하십시오.
- 6 대표자회의(1999) 결의사항 제12조 “무력충돌 시 그리고 무력충돌 종료 후 무기획득과 민간인의 상황”: 제27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의 실행 계획 최종 목표 1.5; 제28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의 인도주의 활동 아젠다 최종 목표 2.3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역할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은 무기획득의 용이함과 오용으로 인한 인류의 희생을 줄이는데 헌신해왔으며,⁶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왔다.

- **보급:** 국제인도법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무기거래 기준의 발전과 이행을 통해서 정부 및 무기 공급자들이 책임 있는 무기 거래 결정을 하도록 장려했다.
- **인식제고:** 무장 폭력으로 인해 인류가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는 ICRC와 각 국의 많은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는 이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 **예방활동:** 군대, 경찰 및 기타 무기 보유자들에게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과 관련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함에 있어 각 국 정부를 지원해왔다. 민간 주민들 사이에 인도적 원칙에 대한 지식 보급과 폭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 역시 무기에 대한 수요와 무기오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위험성 감소:** 민간인에 대한 무장폭력의 위험을 감소시킬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직 전투원 및 아동병사가 되는 위험을 겪었던 어린이들이 사회에 재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장폭력으로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와 연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무기획득이 용이하여 민간 주민에게 심각한 위험을 안겨주는 지역에서 위험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이 있다.
- **희생자 지원:** 무장폭력 희생자들의 사회 재결합을 위한 지원 및 신체 재활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무기가 음식 보다
구하기 쉽고, 의약품 규제 보다 무기
규제가 미약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민간인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
부상 및 고통의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매일 작금의
부적절한 통제로 비롯된 결과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다.



무기를 생산, 유통,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책임감과 의무를 보장할 메커니즘이 인도적 취지에서
시급히 요구된다. 효과적인 무기통제는 국제인도법
준종을 보장하고 전후 화해와 재건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인 보호를 위해 그리고 법 규칙에 근거할 때 무기획득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국가가 신속히 예방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무기획득이 규제되지 않음으로써 인류가 치러야 할 대가
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무장폭력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다 안전
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무기획득을 제한하고 무기의 남용을 막으려는 노력은 적극적으로 확대되
어야 한다.

임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들
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
원회는 분쟁 발생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구호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또한 고통을 예방하기 위
해 국제인도법과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보급하고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1863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모체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weapons.gva@icrc.org) 이나 전화(+41 22 730 26 67)를 통해 국제적십자
위원회 지휘관리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지역대표단

北京市建國門外大街9號齊家園外交公寓B2

우편번호: 100600 | 전화: +86 10 8532 3290 | 팩스: +86 10 6532 0633

이메일: beijing.bej@icrc.org | 웹사이트: www.icrc.org

©국제적십자위원회, 2010년 4월

Targeting the Weapons